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변경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15. 10. 29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1. 채용 예정인원 및 자격요건

채용직종	담당업무(분야)	인원	자격요건 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
한시 계약직	특화맥주 레시피 개발	0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4년제 대학 자연계열 전공(졸업예정)자 ◦ 맥주 제조업무 경력자

2. 전형 방법 및 일정

○ 전형 방법 : 서류 및 면접심사

- 응시자 제출서류를 토대로 면접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

○ 전형 일정

구 분	일 시	장 소
원서교부 및 접수	10/29 ~ 11/8	우편 및 내방접수
서류 심사	11/9 (예정)	
면접 심사	11/10 (예정)	별도 공고 또는 개별 통보

※ 상기 일정은 접수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함.

3. 근무 조건

○ 신분 :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1)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

○ 계약 기간 : 채용일 ~ 2016. 7. 31

※ 연도별 사업 평가 통과 시 1년 단위로 연구기간(2018. 7. 31) 내 연장 가능

1) 제4조(기간제근로자의 사용)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(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)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

1.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

- 급여 수준 : 1,800천원/월 (석사 이상인 경우 추가 산정)
 ※ 식비, 각종수당 등 부가급여 전액 포함
- 근무 형태 : 주 40시간 근무 (공사 사정에 따라 근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)

4. 원서교부 및 접수

- 접수 기간 : 2015. 10. 29 ~ 2015. 11. 8
 ※ 근무시간(9:00~18:00)내 접수 (단, 토,일 및 공휴일 제외)
- 접수 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)
 - 접수처 : (695-961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-35
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
- 필수 제출서류
 - 응시원서 (우리공사 소정양식 기재)
 - 이력서 ·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
 - 경력증명서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
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 각 1부
 - 주민등록 초본 (병역사항 포함) 1부
- 추가 제출서류 (해당자에 한함)
 - 자격증 사본 각 1부
 -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
 - 본 채용 공고 지원을 위하여 보훈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
 - 장애인 등록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 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(자격증 제외)

5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, 향후 5년 간 공사의 모든 직종의 채용시험에 응할 수 없음
-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순으로 임용여부 결정 가능
-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시 또는 발령시 근무부서 변경 가능
- 최종 합격자는 공사가 정한 임용 예정일에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
-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인정 (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)

-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
- 취업지원대상자(보훈자녀)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면접 가점 부여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상 장애인 및 북한 이탈주민·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인 경우 우대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시 반환
-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(☎064-780-332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 1부. 끝.

공사 인사규정 제14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